#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49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문대림·김한규·윤종군

임미애 · 황명선 · 위성곤

전현희 • 이원택 • 김영호

신정훈 · 이병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 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 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 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항).

법률 제 호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도시권의"를 "대도시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 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선) ①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u>대도시</u>	대도시권		
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	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이상		
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의 대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			
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